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현재 인천시립도서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사)인천광역시도서관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한국도서관협회와의 명칭이 유사해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명칭의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검토와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많은 자”를 “많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을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협회”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7인 이상 15인”을 “7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제18조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협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준용하되”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협회”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협회가”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협회”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실: 09시부터 18시까지
2. 열람실: 06시부터 22시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28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 규정”을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2조제8호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u>제2조제4호</u>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p>	<p>제2조(적용) ----- -----<u>제2조제4호</u>----- -----.</p>
<p>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u>법 제24조</u>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 <u>법 제24조</u>----- ----- ----- ----- ----- -----.</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과 부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과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u>많은 자</u>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u>, 1차에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u>새로이</u>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8조(구성) ① ----- <u>1명과 부</u> <u>위원장 1명</u>을 포함한 <u>15명</u> ----- -----.</p> <p>② ----- ----- ----- ----- ----- ----- <u>많은 사람</u> -----.</p> <p>③ ----- <u>하며</u>, <u>한 차례만</u>----- ----- <u>새로</u>----- ----- <u>전임위원 임기</u>----- -----.</p>
<p>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u>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p>	<p>제14조(운영세칙) ----- ----- <u>운영</u>에 -----</p>

현행	개정안
<p>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p>
<p>제4장 <u>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u></p>	<p>제4장 <u>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u></p>
<p>제15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u>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u>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p>	<p>제15조(설립) ① ----- ----- ----- <u>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u>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 -----.</p> <p>② <u>진흥원</u>은 ----- -----.</p>
<p>제16조(사업) <u>협회</u>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협회</u> 소속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4. (생략) 5. 그 밖에 <u>협회</u>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16조(사업) <u>진흥원</u>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진흥원</u> ----- ----- 3. 4. (현행과 같음) 5. ----- <u>진흥원</u>----- -----
<p>제17조(임원) ① <u>협회</u>는 이사장을 포함한 <u>7인 이상 15인</u> 이내의 이사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7조(임원) ① <u>진흥원</u>은 ----- <u>7명 이상 15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u>협회</u>의 재정과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8조(이사장) ----- ----- <u>진흥원</u>----- <u>총괄</u>----- -----.</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무기구) ① 협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p> <p>②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③ 협회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9조(사무기구) ① <u>진흥원은</u> ----- -----.</p> <p>② <u>진흥원</u>----- -----.</p> <p>③ <u>진흥원</u> ----- ----- <u>준용하며</u> ----- ---</p>
<p>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20조(재정지원) ----- <u>진흥원</u> ----- ----- -----.</p>
<p>제2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u>진흥원</u>----- ----- ----- -----.</p>
<p>제2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회가 수행하는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22조(공무원의 파견) ----- <u>진흥원이</u> ----- ----- ----- -----.</p>
<p>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p>	<p>제23조(지도·감독) ① ----- <u>진흥원</u> ----- ----- ----- -----.</p> <p>② ----- <u>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u> ----- -----</p>

현행	개정안
<p>수 있다.</p> <p>제25조(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p> <p>2. 3. (생략)</p>	<p>-----.</p> <p>제25조(개관) -----</p> <p>-----</p> <p>-----</p> <p>-----</p> <p>-----</p> <p>-----.</p> <p>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p> <p>2. 3. (현행과 같음)</p>
<p>제26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p> <p>1. 자료실 : 09 : 00부터 18 : 00까지</p> <p>2. 열람실 : 06 : 00부터 22 : 00까지</p> <p>② (생략)</p>	<p>제26조(운영시간) ① -----</p> <p>-----.</p> <p>1. 자료실: 09시부터 18시까지</p> <p>2. 열람실: 06시부터 22시까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출입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p> <p>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p> <p>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28조(출입의 금지) -----</p> <p>----- 해당하는 사람-----</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p> <p>3. 다른 사람-----</p> <p>- 소지한 사람</p> <p>4. -----</p> <p>----- 사람</p>

현행	개정안
<p>제29조(사용료) ① <u>법 제33조의 규정</u>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2.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u>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9조(사용료) ① <u>법 제33조</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 ----- -----.</p>
<p>제31조(설치 및 구성) ① <u>법 제30조제2항의 규정</u>에 따라 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u>,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제31조(설치 및 구성) ① <u>법 제30조제2항</u>----- ----- -----.</p> <p>② ----- <u>1명</u>을 포함한 <u>10명</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하</u>며, <u>한 차례만</u> -----.</p>
<p>제3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도서관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p>	<p>제32조(기능)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운영에</u> ----- -----</p>
<p>제34조(위탁)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34조(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범위</u>----- -----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도서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 변경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형균